## ●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-8호

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3월 3일 금융위원회

## 1. 개정 사유

금융감독원이 발표한 「검사·제재 혁신방안」('22.1.27.)에 따른 개정 건의사항 및 그간의 규정 개정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「금융업관련법」에 최근 제정법인 「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」,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을 추가(안 제3조)
- 나. "종합·부문검사"를 "정기·수시검사"로 변경(안 제3조, 제8조, 제8조의2, 제13조)
  - ○「검사·제재 혁신방안」의 일환으로,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를 기존 "종합검사 및 부문검사"에서, "정기검사 및 수시검사"로 변경
- 다. 임원 제재 경합가중 요건 변경(안 제24조의2)
- ㅇ 임원 제재가 경합가중되는 동일 검사 내 위법·부당행위의 건수를 기존 2건에서 3건으로 개정
- 라. 금융감독원장의 수사당국에의 고발·통보 요건 명확화(안 제29조)
  - 금융감독원장이 임직원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의 고발 및 통보가능 요건을 "금융관련 법규상 벌칙,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거나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"로 명확화

## 3. 기타 참고사항

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<u>www.fsc.go.kr</u>) '정책마당 → 법령정보 → 고시/ 공고/훈령'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